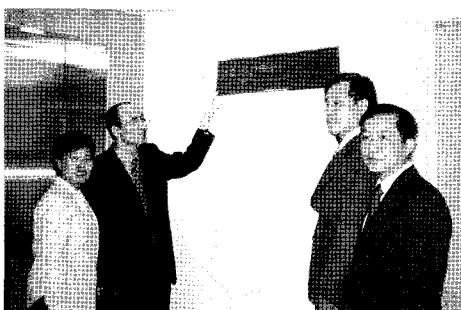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현판식 가져

- 「한국공정거래협회」가 새로운 이름 「한국공정경쟁연합회」로 변경 -



본 연합회(회장 김 용, kfcf.or.kr)는 지난 5월 14일 한국공정거래협회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 용 회장은 연합회의 명칭변경에 대해 “경쟁을 중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고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한국공정경쟁연합회(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KFCF)』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 자율준수제도 보

급, 상담, 분쟁조정,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등 활동을 가속화 해 나감으로써 경쟁관련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7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 교육 실시



본 연합회(회장 김 용, www.kfcf.or.kr)는 공정거래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업계의 자율준수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48개 업체, 69명을 대상으로 『제7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와

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8개 법률, 11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과 해설 및 사례중심의 토의과정으로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였다.

본 연수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석준 과장이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 분야를, 김치걸 과장이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분야를, 김길태 과장이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분야를, 임은규 과장이 “표시광고의 공정화 제도” 분야 등 10개 주제에 대해 주요 이론과 관련법규 내용 및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본 연합회 홍미경 실장이 “CP 운용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한편, 연수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를 주제로 한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되었으며, 개선점으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과정의 편성으로 주제를 줄이는 대신 주제별로 좀 더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응답**

질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에스크로우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적으로 도입 하겠다는 의미가 사업자의 인·허가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겠다는 것인지 여부와 에스 크로우 제도의 수수료는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

응답 에스크로우 기관은 공신력과 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신력있는 에스 크로우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의 범위만을 지정하고 인·허가권을 가지는 것은 아 니다. 에스크로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이 0.2~0.6%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평균 0.4%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회 자율준수관리자 포럼』 개최



본 연합회(www.kfta.org, 김 용 회장)는 업계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활성화하고 경쟁당국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6월 3일(목) 외교센터12층 리더스클럽에서 LG전자, KTF, 한화석유화학, 신 세계건설 등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장항석 독점국장(前 조사국장)은 현업에서 공정거래에 힘써 주시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은 부당내부거래 등 대규모 직권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30개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자금, 자산의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3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3년도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일제조사방식을 지양하고 구체적 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조사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위는 3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고, 사외이사가 총 이사의 과반수이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등 부당내부거래 조사면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KT 등 20여개 기업이 면제 기준에 적합하여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 질의/응답

질의 상품용역 거래를 부당내부거래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 행위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

응답 상품용역 거래가 부당내부거래 또는 차별적 행위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는 고등법원에서의 판례동향도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명확할 것이다. 다만, 상품용역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자금, 자산 지원의 성격이라면 부당내부거래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CP Forum) 참석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LG전자, LG화학, LG칼텍스정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오토에버시스템즈, 비앤지스틸, KT, KTF, 포스코, 포스코건설, 창원특수강,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신세계건설, 대림산업, 대림I&S, CJ홈쇼핑, 웅진식품, 동양제철화학, 서울보증보험, 하이리빙, 아이쓰리샵, 엘트웰, 스마트비컬렉션, 와이더덴닷컴, 허브닥터인터내셔널, 뉴웨이스인터내셔널코리아, 네이처스선사인코리아.

한국경제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경제법학회(회장 박길준 연세대 법대 교수)는 지난 5월 29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B106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대)는 “엔론사태와 미국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엔론사태의 전말과 이 사건에서 나타난 미국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Sarbanes-Oxley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뒤, 동 법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엔론사태와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과 그로 인한 증권시장 전체에 미치는 신뢰의 상실은 어느 특정기업의 부도덕성이나 비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시스템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Sarbanes-Oxley법의 문제점으로는 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후퇴, 연방정부의 관할 확대, 스톡옵션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진의 인센티브제에 대한 개혁의 미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둘째, 자본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미국 자본시장의 변화와 개혁은 즉각적으로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전세계의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의 세계화에 대비해서 외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Sarbanes-Oxley법에 포함된 기업회계와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이 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회계제도선진화를 위한 법개정에 착수하였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회계 관행 및 기업문화에서의 차이를 감안해서 우리에게 알맞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어 이대희 교수(인하대 지적재산학과)는 “특허플랫폼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매우 복잡한 다수의 표준과 기술들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특허플랫폼의 성격 및 구조를 3GPP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허플랫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특허플랫폼의 형성과 관련되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수 특허를 처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인 특허풀과 특허플랫폼 중 어떠한 형태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그 1차적 판정기준은 기술의 복잡성 및 특허의 숫자라 할 것이다. 즉, 표준에 반영된 기술이 매우 복잡하여 이에 해당하는 특허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많이 산재(散在)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풀보다는 특허플랫폼이 보다 훌륭한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3G 특허플랫폼의 경우에는 표준 자체가 복잡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허플랫폼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유럽연합 및 일본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모든 특허풀이나 특허플랫폼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특허풀이나 특허플랫폼의 유효성이 인정된 것은 이들이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특정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이 반독점법을 위반하는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서는 경쟁의 촉진이나 독점적 지위의 형성 등과 관련된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의 구조 내지 특성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